

서울특별시의회
제33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
안전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5. 6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
안전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
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특히, 학교에서의 화재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
학생의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
화재의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
판단됩니다.

- 이에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
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, 소방 안전 교육은 물론,
실태조사와 학교 소방시설 협력체계 등의 구축 사항을

규정하여, 학교 화재의 선제적 대응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,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이 보장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경우,
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·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서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5조의 경우,
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안 제6조는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으로서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7조의 경우,
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 조항으로서,
119 화재 신고 요령 및 비상 탈출,
화재 대피 훈련 교육을 비롯해,
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,

□ 또한, 안 제8조의 경우,
학교장에게 상위법에 근거한,
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을 통해 소방안전교육 시
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, 소방서와 연계해
전문적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그리고, 안 제9조의 경우,
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
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대한
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□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의 경우,
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
정부, 지자체,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
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